

이용약관 별표

[MVNO 서비스 퍼스트모바일(FIRSTMOBILE)]

목 차

[별표 1] 가입 가이드 라인 및 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가이드 라인

1. 이동통신서비스 기본요율
2. KT 후불 요금제(VAT포함)
3. 요금 등의 할인
4. 요금 등의 감면
5. 부가서비스

[별표 2] 구비서류

1. 가입 계약서
2. 부가서비스 신청서
3. 변경 신청 시
4. 일반통화내역 및 이용요금 확인용 통화내역,가입확인사실 열람시
5. 해지 시

[별표 3]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 기준 및 제한사항

[별표 4] 고객 불만처리대책

1. 이용고객 불만 처리절차
2. 고객민원 유형별 처리대책

[별표 5] 국제로밍서비스

1. KT국가별 로밍서비스 요율표

● 가이드라인

구분	기준회선 수	내용
<p>내국인 (선후불 포함)</p>	<p>180일 이내 3회선 (4회선 이상 제한)</p>	<p>○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상대방(법인 포함)의 180일간 이동전화 통합 개통정보를 조회한 후 기준회선 수를 초과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가입을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6개월 미만 법인(사업자 등록 기준)에 대해서는 초과개통을 제한하며, 통신사 이용약관에 따라 가입 가능 회선수를 가이드라인 기준 회선 수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제한 가능
<p>외국인 (여권 선불 개통)</p>	<p>180일 이내 1회선 (2회선 이상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외국인(등록증개통) 예외사항) 계약상대방이 지점 방문을 통한 본인확인 후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기준회선을 초과하는 가입 허용 단, 12개월 이내에 계약상대방의 명의도용 및 불법스팸,보이스피싱,불법대부,금융행위광고,대포폰,발신번호변작 등 부정이용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사항 적용 불가 - (국민 개통 예외사항) 아래 유형의 비자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의 경우 기준회선은 2회선으로 하며, 가입 90일 경과 시에도 회선 유지 허용
<p>외국인 (등록증 개통) (선후불 포함)</p>	<p>180일 이내 2회선 (3회선 이상 제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교,공무,협정 수행자 및 그 가족 (A-1,A-2,A-3) 2.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 가족과 기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2회선 개통 시 지점 방문을 통한 본인 확인 후 가능 ● 여권에서 등록증으로 명의변경 시 기준회선 유지로 간주
<p>법인</p>	<p>180일 이내 4회선 (5회선 이상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예외사항) 법인의 초과 개통 기준에 따라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초과 가입 및 회선 한도증설을 허용 ● 단, 12개월 이내에 계약상대방의 명의도용 및 부정이용 이력이 있는 경우 불가 ● 초과 가입의 경우 반드시 본사/지점/대리점을 방문하여 개통, M2M, 데이터 전용 회선 제외 <p>○ 계약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선불폰 가입을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통신 사업자, 공공기관, 특수법인 제외

[별표 1]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1. 이동통신서비스 기본요율

항목	기준	통화료(VAT+)	비고
음성	초	1.98원	
문자	건	33원	
데이터	MB	22.528원	0.011원/0.5KB
MMS(문자)	건	44원	
MMS(사진)	건	33원	사진/그림/배경음악 첨부
MMS(동영상 첨부)	건	440원	동영상 첨부

※ 별도의 요율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요금제(상품)에 고객이 알아보기 쉽도록 적용요율을 표시함

※ 요금제 별 기존통화료가 상이합니다. (요금제 비고 참조)

※ 무료 제공량을 초과하는 경우 공통사항 이동통신서비스 기본요율이 적용됩니다.

2. 후불 국내 요금제 (VAT포함)

요금제 명	기본료 (월)	음성제공량	SMS제공량	데이터제공량	QOS 제공속도	부가통화	비고
퍼스트 1G	13,200 원	60분	50건	1G	-	-	-
퍼스트 시니어 2GB+(후후)	14,300 원	기본제공	기본제공	2G	400Kbps	30분	-
퍼스트 시니어 4GB+(후후)	19,800 원	기본제공	기본제공	4G	400Kbps	30분	-
퍼스트 시니어 8GB+(후후)	29,700 원	기본제공	기본제공	8G	1Mbps	30분	-
퍼스트 안심 7G+	29,000 원	기본제공	기본제공	7G	1Mbps	300분	2025.05.02.~2025.12.31. 가입시 추가데이터 프로모션 10GB 제공
퍼스트 안심 11G+	59,000 원	기본제공	기본제공	11G+ 일2G	3Mbps	300분	-
퍼스트 안심 15G+	40,000 원	기본제공	기본제공	15G	1Mbps	300분	2025.05.02.~2025.12.31. 가입시 추가데이터 프로모션 10GB 제공
퍼스트 데이터 7G+ 블라이스	29,000 원	기본제공	기본제공	7G	1Mbps	300분	2026.03.01. ~ 신규가입 중단
퍼스트 데이터 15G+ 블라이스	45,000 원	100분	100건	15G	3Mbps	-	2026.03.01. ~ 신규가입 중단
퍼스트 데이터 100G+ 블라이스	65,000 원	기본제공	기본제공	100G	5Mbps	300분	2026.03.01. ~ 신규가입 중단
퍼스트 데이터 11G+	59,000 원	기본제공	기본제공	11G+ 일2G	3Mbps	200분	-
퍼스트 데이터15G+	40,000 원	기본제공	기본제공	15G	1Mbps	300분	2025.05.02.~2025.12.31. 가입시 추가데이터 프로모션 10GB 제공
퍼스트 데이터 10G+	35,000 원	기본제공	기본제공	10G	1Mbps	300분	-
나무데이터 7G+	24,200 원	기본제공	기본제공	7G	1Mbps	300분	온라인 제휴 전용
퍼스트 투게더 워치	16,500 원	50분	250건	250MB	-	-	웨어러블 전용
퍼스트 스마트패드5+	6,000 원	제공 없음	제공 없음	5G	200Kbps	-	법인 패드 전용
퍼스트 복지 심플	15,000 원	100분	100건	1G	-	-	취약계층 전용
퍼스트 복지 안심7G	20,000 원	기본제공	기본제공	7G	1Mbps	-	취약계층 전용
퍼스트 5G 슬림	50,000 원	기본제공	기본제공	10G	1Mbps	300분	-
퍼스트 5G 플러스	55,000 원	기본제공	기본제공	30G	1Mbps	300분	-
퍼스트 5G 심플	65,000 원	기본제공	기본제공	110G	5Mbps	300분	-
퍼스트 5G 스페셜	70,000 원	기본제공	기본제공	200G	10Mbps	300분	-

※ 무료 제공량을 초과하는 경우 공통사항 이동통신서비스 기본요율이 적용됩니다.

※ 퍼스트 안심11G+, 퍼스트 데이터11G+, 요금제의 경우 월 기본 제공 데이터 소진 후 최대, 일 2GB 한도 내에서 별도 추가 과금 없이 정상 속도로 이용 가능하며, 일 2GB 소진 후에도 최대 3Mbps 로 속도로 무료 이용 가능

※ 3G 단말기에서 사용 불가.

◆ 음성 및 문자 기본제공

■ 아래의 경우에 해당 시, 본 요금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경우 가입 이동전화 회선에 SMS 로 혜택 중단을 통지하며, 이후 통화량에 대해서는 종량 과금함(1.98 원/초)

- 일 음성 통화량이 600 분을 초과하는 횟수가 월 중 3 회를 넘는 경우
- 음성통화량이 월 6,000 분(기본료 55,000 원 미만) 또는 10,000 분(기본료 55,000 원 이상)을 초과할 경우 (영상통화는 음성의 1.66 배로 계산)

- TM / 폰팅 등과 같이 음성통화를 광고·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망내 수신처가 월 1,000 개 회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광고·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함)

■아래의 경우에 해당 시, 본 요금제·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이 경우 가입 이동전화 회선에 SMS 로 혜택 중단을 통지하며, 이후 통화량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서비스 기본요율에 따라 종량 과금함

- [SMS & MMS 관련] 일 SMS & MMS 사용량이 150 건을 초과하는 횟수가 월 중 10 회를 넘는 경우
- [joyn.T 대화(텍스트) 관련] 일 joyn.T 대화(텍스트) 사용량이 2,000 건을 초과하는 횟수가 월 중 3 회를 넘는 경우, 또는 당월 총 joyn.T 대화(텍스트) 사용량이 15,000 건을 초과하는 경우
- 메시지를 광고성 스팸 메시지 발송과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수신처가 월 2,000 개 회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함)
- 광고,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 단, 상업용 목적이 아닌 직업상 다량 문자 이용자(예시. 택배업종사자, 콜택시운전원, 신용카드카드배달원, 대리운전업종사자 등의 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절차를 통해 발송제한 기준 예외 적용 가능(초과사용분에 대해서는 종량 과금)

3. 요금 등의 할인

- 약정할인

- ◆ 요금약정 할인제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서 요금 할인 반환금도 발생하지 않음
- ◆ 신규가입일로부터 14일이내 주 생활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외 사유로 해지(단, 단말기 등 구입시 지급받은 물품일체를 손상된 부분 없이 반납해야 함)하거나, 고객의 사망, 이민 등의 사유로 해지(단,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시, 약정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 부과 면제됨

4. 요금 등의 감면

감면대상	감면내용	비고
사업용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비, 기본료, 국내통화료, 국제통화료, 부가사용료, 데이터서비스 사용료, 수수료, 실비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가 정보통신사업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지정·운영하는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업무용 및 종합민원용 서비스 포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업무용의 경우 국내통화료의 일부만 면제할 수도 있음
전화번호 안내통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통화료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안내 서비스를 받기 위한 통화
회사사유로 인한 이용 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료, 부가사용료(기본료/월), 임대료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기간동안 일할계산
통신시스템 문제에 의한 단절통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통화료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 초 미만(통화복구시간 포함)의 음성통화 및 무선데이터(단, KB 과금 통화 제외) 중 이용자의 통화종료행위와 관계없이 회사의 통신시스템 문제에 의하여 단절된 경우
이용고객의 일시정지 또는 회사의이용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기본료 3,850 원/대당 (VAT 포함). 단, 「병역법」에 따른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현역병(전환복무 자를 포함)으로서 전파법 제 29 조에 따른 무선국의 이용을 정지한 가입자의 경우 월 기본료 3,850 원 면제 (전파사용료 감면분 포함/ 1 인당 최대 3 회선 한도) 부가사용료(기본료/월)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기간동안 일할계산 모든요금제에 동일하게 적용 군입대정지자의 경우 전파사용료 감면 관련 개인정보가 정부기관에 제공될 수 있음.
통화품질 불량으로 해지 한 고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 후 14일 이내 해지시 가입비 반환, 해당 기본료의 50% 할인 가입 후 15일 이상 6개월 이내 해지시 1개월 해당 기본료의 50%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 후 고객의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 불량으로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만 적용 주생활지: 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
일시정지 및 이용 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기본료 3,850 원/대당 (VAT 포함) 군입대정지자의 경우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기간동안 일할계산 모든요금제에 동일하게 적용 군입대정지자의 경우 전파사용료 감면 관련 개인정보가 정부기관에 제공될 수 있음.
데이터통화료가 15 만원 초과한 고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 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면제. 단, 인터넷 직접접속서비스(PDA 또는 무선모뎀 및 휴대폰을 통해 PC 연결하여 무선인터넷 접속하는 경우)는 약관적용일 기준으로 면제 처리되며, 별도 약관신고가 있을 때까지 연장 적용함. 법인명의 가입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함.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단체 또는 비영리 목적의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 등록된 자
국가유공자/특수학교/아동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 요금제에 따른 할인 혜택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에 한함, 광복회 소속의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소속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그 유족, 4.19 혁명 부상자회 소속의 4.19 혁명 상이자, 4.19 혁명 희생자 유족회 소속의 4.19 혁명 희생자 유족, 재일학도 의용군 동지회 소속의 재일학도의용군,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회

<p>기초생활수급자</p>		<p>소속의 광주 민주부상자, 6.18 자유 상이자회 소속의 6.18 자유 상이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 - 국가 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체(광복회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p>
<p>차상위계층용 서비스</p>		<p>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 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 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2제3호라목에따라희귀난치성질환등으로서본인부담액을경감받는자 -영유아보육법제34조제1항에따라보육에필요한비용을지원받는자 -영유아보육법제24조의2제1항에따라유아교육에필요한비용을지원받는자 -장애인복지법제49조에따른장애수당을지급받는자와같은법제50조제1항에따른장애아동수당을지급받는자 -장애인연금법제10조에따라장애인연금을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따른보호대상사 이경우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100분의130이하인자를포함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따라구축운영중인시스템을통해우선돌봄차상위에해당함이확인되는사람 -만6세이하아동은제외</p>

5. 부가서비스

① 기본 제공서비스 (별도의 신청 없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무료 부가서비스)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발신번호표시	수신 시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핸드폰 상에 자동으로 표시되는 서비스	
통합사서함	핸드폰 전원이 꺼진 경우 전화를 건 사람의 메시지와 연락처를 보관해주는 서비스 (음성메시지를 들을때와 저장할때에별도통화료부과)	
정보제공사업자번호차단	정보제공사업자가 보내는 스팸 음성, 스팸 문자 메시지들을 차단해주는 서비스	

② 무료 부가서비스 (별도 신청 필요)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비고
발신번호표시제한	수신하는 사람이 발신번호표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도 발신하는 사람의 번호가 액정에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	
통화중대기	통화중에 다른 전화가 걸려오면 통화중인 상대방을 대기시키고 새로 걸려온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착신거절	통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바로 음성사서함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	
무선인터넷차단	무선인터넷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무선데이터 통화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	
국제전화발신제한	국제전화 발신을 차단하는 부가서비스	
익명호수신거부	발신번호표시 제한한 발신자에게서 걸려오는 전화 수신을 거부하는 서비스. 통화로 연결되지 않고 ARS가 안내되며 바로 음성사서함으로 연결	
010번호연결서비스	01X번호에서 010번호로 변경하는 경우 및 기존번호를 해지한 후 새로운 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이전 번호로 걸려온 전화와 메시지를 자동으로 변경된 번호로 연결 후 변경내역을 문자 또는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	
스팸차단서비스	고객이 설정한 조건(문구, 번호 등)을 포함한 메시지를 차단하는 부가서비스	
번호도용문자 차단서비스	인터넷을 이용한 문자발송 서비스에서 타인이 임의로 신청고객의 이동전화 번호를 발신번호(회선번호)로 설정하여 발송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서비스 ※서비스신청자가인터넷발송문자사용시이용자본인의전화번호로발송하는경우에도불가합니다. ※당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문자중계사업자가연동되어제공하는서비스특성상서비스가일시적으로제공되지않을수도있습니다.	자사가입자고객의 신청을 받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문자중계사업자에게 전달하면 문자중계사업자가 차단. 문자중계사업자는 KT, LGU+, SK브로드밴드, SK네트웍스, SK텔링크, 인포뱅크, 다우기술, 스탠다드네트웍스, 슈어엠, 삼성SDS 10개사업 ※문자중계사업자: 일반유선전화및이동전화단말기에서발신되지않고웹(인터넷)또는문자발신전용프로그램등을이용하여문자를발송하는서비스제공사업자

③ 유료 부가서비스 (별도 신청 필요)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월 이용요금(VAT포함)
캐치콜	본인의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거나, 통화중 또는 통화할 수 없는 지역에 있을 경우 걸려온 전화번호를 통화가 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SMS로 표시해 주는 서비스	550원
착신전환	핸드폰이 상태와 상관없이 걸려온 전화를 미리 지정한 일반전화나 핸드폰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 (음성, 문자 전환 가능)	1,650원
	핸드폰이 상태와 상관없이 걸려온 전화를 미리 지정한 일반전화나 핸드폰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 (음성만 전환 가능)	770원

※ 실비

항목	요금부과기준	비고
가입비	없음	
보증보험료	가입시 회사가 정한 보험료 납부방법:즉납또는후납	- 사유발생 시 -이동전화사용요금을보증하기어렵다고인정되는 경우부과
번호이동 수수료	800원(부가세 포함)	

※ 수수료

종 별		요금부과 기준	비고
단말기대여료		1단말기마다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부과(부가세 포함)	회사의 단말기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고객
번호이동 수수료		800원/1건 (부가세 포함)	타사에서 번호이동시 부과
국제로밍 수수료		이용약관 적용	국제로밍 이용계약자
KT번호안내서비스 이용료		KT이용약관 적용(부가세 별도)	KT의 번호안내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KT번호안내 직접연결서비스		KT 이용약관 적용(부가세 별도)	통화료: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와 관계 없이 1초당 2원 부과
KT번호안내 간접연결서비스		KT 이용약관 적용(부가세 별도)	지역번호 + 114 연결시
전화정보서비스 이용료		회사와 전화정보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금액(부가세 별도)	통화료 부과
콜렉트콜 서비스	데이콤 16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피엔엘 고객이 발신 시 - 착신자에게 2.4원/초(연결된 1가입자당)의 통화요금부과 ○ 더피엔엘 고객이 수신 시 - 해당발신이동전화또는 유선전화사업자의 요금(해당사업자의 이용약관기준)이 부과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를 받는 착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서비스 - 서비스제한대상: 선불이 용가입자
	온세 1677		
	SK브로드밴드 1655		
	SK텔링크 1682		
	KT 1541		

[별표 2] 구비서류

1. 가입 계약 시

구분	내용	비고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 신분증(단, 비대면 가입 시에는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의 전자서명인증서*, 신용카드 인증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기기변경에 한함)으로 대체가능) ○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명의자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이용계약서는 공통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사업자 : 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추가) ○ 일반법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p>※법인 초과 개통시 납세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세금납부증빙 추가로 제출요청가능함</p>			
미성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4세 미만 - 가입고객내방시: 법정대리인신분증, 가족증명서류,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동의서(단, 법정대리인동행시 인감증명서 제외) - 법정대리인만내방시: 법정대리인신분증, 가족증명서류, 법정대리인동의서 - 제3자내방시: 법정대리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가족증명서류,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동의서 ○ 만 20세 미만 - 가입고객신분증 법정대리인신분증, 인감증명서, 가족증명서류, 법정대리인동의서(단, 대학생 및 직장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대신하여 재학증명서, 학생증, 재직증명서 중 1개 제출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가족증명서류 인정) 		
외국인	구분	선불	후불	
	일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	여권 또는 국내거소 신고증	국내거소 신고증	
	공관원	여권 또는 공관원 신분증	여권 또는 공관원 신분증	
	주한미군	미군 ID카드 또는 운전면허증+미군 증명서류	미군 ID카드 또는 운전면허증+미군 증명서류	
외국인 가입계약				
장애법인 및 아동복지시설	법인설립 인·허가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특수학교	학교설립인가서(학칙사본),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국가기관	사업자등록증, 기관장명의 위임공문, 대리인신분증			
국가유공자 단체	사업자등록증, 관련 법률에 근거한 증빙서(법인등기부 등본 등),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사회복지용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저소득층용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방문확인등)로 본인의사확인가능시: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 본인의사확인불가능시: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p>※차상위계층의 경우 다음 증명서류 추가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른 대상자) 			
차상위계층용 서비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대상자)			

※ 가입가능 내국인 성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구 운전면허증 제외), 외국인등록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 수 것에 한함)

- 웹 사이트를 통한 가입 시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 및 신용카드 인증을 신분증 사본을 대체 가능함

- 전자계약을 통한 가입 시 방문자(가입자 또는 대리인)는 본인확인 후 신용카드 인증으로 신분증 사본을 대체 가능함

※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가입 시 혹은 혜택만료 후 재신청시에 행정안전부 주민서비스 통합시스템을 11일부터 시행)

※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위탁) 및 안전행정부 를 통해 주민등록상 미성년자의 부모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

2. 부가서비스 신청시

구분	내용	비고		
방문	이용계약서 및 신분증	전자계약을 통한 신청 시 방문자(가입자 또는 대리인)는 본인확인 후 휴대폰인증		
전화	이용계약서 및 신분증 팩스 송부, 고객정보확인 (전화번호,고객명,주민등록번호, 주소,비밀번호등)	또는 신용카드 인증으로 신분증사본을 대체 가능함		

3. 변경 신청 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등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부착/기재되어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단, 학교에서 발행한 학생증은 사용가능하며, 2002.6.30일 이전에 발급된 구형 운전면허증은 2005.10.1일부터 사용불가)

※ 전자계약을 통한 신청 시 방문자(가입자 또는 대리인)는 본인확인 후 휴대폰인증 또는 신용카드 인증으로 신분증 사본을 대체 가능함

4. 일반통화내역 및 이용요금 확인용 통화내역,가입확인사실 열람 시

구분	내용			비고
번호/단말기/주소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 신분증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변경신청서 공통
개명, 개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 신분증, 호적등본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 신분증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관계법령 또는 관보, 대리인 신분증 			
명의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수/양도인 방문시 : 신분증(양수/양도인) - 양도인만 방문시 : 신분증(양수/양도인), 양수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 양수인만 방문시 : 신분증(양수/양도인), 양도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 법인고객 및 대리인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의자신분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신분증(법인의 대리인, 건강보험증이나 재직증명서 가능) - 위임여부를 전화(방문확인 등)로 확인 불가시 명의자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일시정지 및 일시정지 해제	개인	본인 신청시	대리인 신청시	
	방문 신청	○ 명의자 신분증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팩스 신청	○ 신청서 및 명의자 신분증 사본 팩스로 송부	○ 신청서, 명의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팩스로 송부	
	전화 신청	○ 고객정보 확인(고객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고객정보 확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팩스로 송부 (단, 일시정지 해제시에는 명의자 신분증 사본 팩스로 송부)	
	법인	대표자 신청시	대리인 신청시	
	방문 신청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택 1, 대표자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공문), 대리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위임공문, 사원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택 1, 전산에 등록된 실사용자/대리인 신분증 	
	전화 및 팩스 신청	○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를 팩스로 송부	○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를 팩스로 송부	

구분	내용	비고
일반통화내역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 본인신청시: 본인신분증 단말기(SMS인증번호확인용) - 대리인신청시: 본인인감날이된 위임장및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본인단말기휴대(SMS인증번호확인용), 또는 SMS인증번호 확인 ○ 개인사업자, 법인, 국가기관: 기업신청시 구비서류와 동일 	
이용요금 확인용 통화내역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요금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통화내역 열람 요청시에는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통화내역의 일부를 삭제한 후 제공 가능 ○ 방문 신청시 : 일반 통화내역 열람과 동일하게 처리 ○ 팩스 및 우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및 신청서 사본을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 전화로 본인의사 확인 후 우편, 팩스로 제공 (대리인 신청 및 전화 신청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팩스, 우편 신청 불가 ○ 본인확인을 위해 명의자의 통화내역 신청이 동전화로 전송된 SMS인증번호가 확인되는 경우 통화내역 제공 가능 ○ 대리인이 배우자인 경우 본인의사 확인 전화를 실시할 수 있음
가입확인사실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전화 회선 가입확인을 위한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우편 신청 불가 ○ 명의자 신분증 및 가입확인사실 신청서 필요 ○ 대리인 신청시 : 명의자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필요

5. 해지시

① 방문시

구분		구비서류	비고
일반	본인	가입고객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지신청서(공통) ○ 개인사업자대리인방문시 가입고객인감증명서, 가입고객인감도장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법정대리인동행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제외
	대리인	가입고객 신분증, 가입고객 인감증명서, 가입고객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만으로 해지 가능)	
법인	개인사업자	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일반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본인	가입고객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법정대리인	가족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외국인(대리인 불가)		가입계약시 구비서류와 동일	
국가기관		국가기관 해지신청 공문서, 대리인신분증(건강보험증)	

※ 일반의 대리인 방문시 가입고객과 전화통화 확인이 가능한 경우 가입고객 및 대리인신분증만으로 업무처리 가능(단, 전화통화이력은 별도 관리)

※ 전자계약서를 통한 신청 시 방문자(가입자 또는 대리인)는 본인확인 후 신용카드 인증 시 신분증사본을 대체 가능함

② 팩스, 전화, 우편 요청 시

구분	구비서류	비고
일반	가입고객 신분증	○ 지점으로 보내야 할 공통 서류 - 해지신청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위임증문서	- 해지요청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외국인	가입계약시 구비서류와 동일	- 명의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또는 자동이체 계좌
국가기관	국가기관 해지신청 공문서, 대리인신분증(건강보험)	- 당일에 지정계좌로 납부한(해지즉납금, 당월 및 미납요금) 입금증 사본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구비서류 추가 (방문 가입 시 대리인 구비서류와 동일)

③ 그외 예외적인 경우

구분	해지사유	대리인 제한	구비서류	비고
일반	사망	가족	사망확인서류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군입대	가족	입영사실확인서 : 입영통지서 또는 병무청 웹사이트 내 입영일자/부대조회 자료, 병적증명서, 선발통지서 등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 단, 입대후 퇴소 및 전역 등 군복무 사유가 해제될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장기 일시정지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추후 부당하게 요금을 감면받은 것이 확인 될 경우 전파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거 군입대 장기일시정지로 인해 감면받았던 감면액전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기체류	가족	출입국사실에 관한 증명서	
	형집행 중인 자	가족	재소증명서	
	행방불명	가족	행방불명 확인 서류	
법인	법인파산	파산전 대표자	말소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 예외적인 해지 요청 시 증빙서류 대신 “대리인 해지 확인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해지 가능

* 가족이 대리인으로 방문 시에는 가족확인서류 추가 필요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가족의 범위 : 동일한 주민등록상 또는 가족관계증명상 포함된 사람이거나 이력이 있는 자(이혼으로 호적상에서 삭제된 자는 제외)

[별표 3] 정보통신 상거래 질서 문란자 기준 및 제한사항

구분	내용	비고
대포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의자를 교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매개로 불법대출 및 부정사용 등을 이용·조장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자는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1년 동안 이용신청 승낙을 제한한다. ○ 대출 등의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 자는 2년간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1회선만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개설이 본래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명의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자는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1년간 이용신청 승낙을 제한한다. ○ 명의도용을 상습 허위신고 하는 자(이동통신 사업자에 2회 이상 허위신고 이력이 있는자)는 2년간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1회선만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제출서류 및 제출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불법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제 관련 프로그램을 유통하거나 ESN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단말기 불법 복제에 가담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자는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1년간 이용신청 승낙을 제한한다. ○ 복제를 의뢰하거나 복제 단말기를 사용하여 처벌받은 자는 2년간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2회선만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불법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중고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명의자 1인의 명의로 중고휴대폰을 5회선 이상 다량 개통하거나 유령법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의 승낙을 제한할 수 있다. 	비정상적인 개통으로 의심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 신청]

구분	내용	비고
도용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의자 본인이 개인정보보호 및 도용방지를 위하여 가입신청서 등에 모든 이동통신회사의 가입제한을 요청한 경우. 단, 추후 명의자의 가입제한을 해제할 때 본인만이 신청이 가능함 	개인정보보호요청

[별표 4] 고객 불만처리대책

1. 이용고객 불만 처리절차

- ① 고객센터의 접수/처리를 가입신청, 변경, 해지, 상품, 요금, 배송, 결제, 통화품질, 기술지원, 기타 등 문의/불만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고객중심의 처리절차를 확립하고, 구체적인 문의 및 불만사항은 상담원에 연결되어 이를 처리토록 한다.
- ② 문의/불만사항에 대해 즉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불만유형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2. 고객민원 유형별 처리대책

- ① 고객보호를 위한 민원유형별 처리는 당일접수 민원은 당일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최대 2시간 이내 고객통화를 진행합니다. 다만 확인이 필요한 민원 등은 고객의 양해를 구한 후에 재통화를 약속하고 신속히 처리함

민원유형	처리방법	처리기한
회사명 미인지	가입서류 및 상담내용(녹취) 토대로 상담	당일처리
요금제 미인지	가입서류 및 상담내용(녹취) 토대로 상담	당일처리
약정기간 미인지	가입서류 및 상담내용(녹취) 토대로 상담	당일처리
정지관련 미인지	가입서류 및 상담내용(녹취) 토대로 상담	당일처리
기변불가 미인지	가입서류 및 상담내용(녹취) 토대로 상담	당일처리
해지위약금 미인지	가입서류 및 상담내용(녹취) 토대로 상담	당일처리
기타가입사항 미인지	가입서류 및 상담내용(녹취) 토대로 상담	당일처리
회사정책 불만	서비스 관련하여 타사와 비교를 통한 상담을 진행	당일처리
고객센터연결 불만	불편한 점에 대한 사과 응대 및 개선 약속	당일처리
청구서관련 불만	불편한 점에 대한 사과 진행 및 별도 관리	당일처리
통화내역열람 불만	열람절차 불만으로 절차 간소화 진행	당일처리
사은품관련 배송 지연	사은품 재고 사유 파악 후 처리, 보상	당일처리

민원유형	처리방법	처리기한
상담원 불친절	사과 후 혜택 제공, 개선사항 안내	당일처리
업무 오상담 관련	오상담 내용에 대해 명확한 재상담, 혜택제공	당일처리
업무 오처리 관련	오처리된 내용 확인 후 정상처리 확인	당일처리
업무누락관련	누락된 내용에 대해 금전 부분과 불편내용에 대한 처리	당일처리
기타 회사관련사항	회사 서비스 및 정책 불만에 대해 개선사항, 타사비교 설명	당일처리
단말기불량	교환 및 또는 대체폰 또는 제조사 A/S센터 안내	당일처리
대체폰불만	대체폰 지급	당일처리
유심관련불만	유심관련 오배송 또는 불량으로 인한 교체	당일처리
기타 단말관련	단말기 사용불편 및 단말기 외관문제로 교환, 상세 설명	당일처리
14일 이전 취소건	개통취소에 따라 처리 진행	당일처리
명의자 사망 해지	명의자 사망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단말기 반납, 요금감면처리	당일처리
만기요금제 미적용	계약기간 종료이후 최저요금제 미변경 상담, 환불처리	당일처리
기타 만기관련	만기고객 서비스 혜택 및 재임대 관련 상담	당일처리
통화품질불량	통화품질 개선 및 무료통화제공	당일처리
명의도용	영업대리점 이관, 명이도용 확인될 경우 처리	당일처리
전산미권한불만	전산 권한 제한에 따른 지연 또는 처리불가시 조속히 본사 처리	당일처리
대리점/판매점 과실	영업대리점 이관(24시간 내), 업무과실시 선배상 후 대리점 처리	당일처리
고객의 일방주장	타당성 있는 경우 상담처리, 타당성이 없는 경우 설득	당일처리
요금불만	정확한 사용내역으로 상담	당일처리
데이터요금 불만	정확한 사용내역으로 상담	당일처리
부가서비스관련 불만	사용내역 및 등록 내용 확인 후 상담	당일처리
소액결제불만	사용내역 및 등록 내용 확인 후 상담	당일처리
약정할인 해지위약금 불만	제공되는 혜택 설명 후 환불조치 또는 수납진행	당일처리

[별표 5] 국제로밍서비스

※국제로밍관련보충설명자료

구분	내용
요금부가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밍서비스 이용자 발신시 - 서비스 이용시간에 발신 요율을 적용하여 통화료 산정 ○로밍서비스 이용자 착신시 - 서비스이용 시간에 착신요율을 적용하여 통화료 산정을 하되 한국과 방문국간의 국제전화요금이 추가로 발생됨 - 착신통화료는외국사업자가착신요금을부과할경우에만적용됨
Call set-up비용	○통화발생에 필요한 부수비용을 요금 외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1. KT국가별 로밍서비스 요율표

- 국가별 로밍요금 Table

VAT포함 (단위 : 원)

<WCDMA/GSM자동로밍 국가별 요금(단위: 원/초, 건 부가세 포함)>

국가	음성(단위:원/초)			영상			데이터 (0.5KB 당)	로밍SMS 발신	로밍LMS 발신	로밍MMS발신
	착신요금	현지	한국/제3국	착신요금	현지	한국/제3국				
가나	-	6.38	9.13	-	-	-	0.275	110	110	550
가봉	-	5.61	90.31	-	-	-	2.2	220	220	550
가이아나	-	21.78	43.45	-	-	-	0.275	330	330	550
감비아	-	19.58	43.56	-	-	-	2.2	330	330	550
건지섬	-	21.45	87.23	-	-	-	0.275	330	330	550
과달루페	-	14.08	83.05	-	-	-	0.275	220	220	550
과테말라	18.81	18.81	50.71	-	-	-	0.275	220	220	550
괌	1.32	1.98	1.98	-	-	-	0.275	22	33	220
그레나다	-	21.78	43.45	-	-	-	0.275	330	330	550
그루지아	-	7.15	46.53	-	-	-	0.275	110	110	550
그리스	-	1.98	1.98	-	3.3	3.3	0.275	22	33	220
그린란드	-	8.80	32.23	-	-	-	0.275	110	110	550
기니	-	8.03	29.70	-	-	-	2.2	330	330	550
기니비사우	-	18.59	81.07	-	-	-	-	330	330	550
나미비아	8.58	8.36	37.73	-	-	-	-	110	110	550
나우루	8.58	15.40	27.06	-	-	-	0.275	330	330	550
나이지리아	-	9.68	23.98	-	-	-	0.275	220	220	550
남수단	12.87	11.44	37.84	-	-	-	-	330	330	550
남아프리카공화국	-	8.25	18.15	-	-	-	0.275	110	110	550
네덜란드	-	14.08	30.58	-	16.06	27.50	0.275	330	330	550
네팔	11.55	17.16	42.90	-	-	-	0.275	330	330	550
노르웨이	-	1.98	1.98	-	3.3	3.3	0.275	22	33	220
뉴질랜드	-	1.98	1.98	-	-	-	0.275	22	33	220
뉴칼레도니아	-	8.36	63.03	-	-	-	2.2	330	330	550
니제르	-	14.08	77.66	-	-	-	-	330	330	550
니카라과	24.86	16.61	109.45	-	-	-	0.275	220	220	550
대만	0.99	1.98	1.98	0.99	3.3	3.3	0.275	22	33	220
데시라데	-	14.08	83.05	-	-	-	0.275	220	220	550
덴마크	-	1.98	1.98	-	-	-	0.275	22	33	220
도미니카	-	21.78	43.45	-	-	-	0.275	330	330	550
도미니카공화국	-	17.60	74.58	-	-	-	0.275	330	330	550
독일	-	1.98	1.98	-	-	-	0.275	22	33	220
동티모르	-	12.76	29.70	-	-	-	0.275	330	330	550
라오스	-	1.98	1.98	-	-	-	0.275	22	33	220

라이베리아	-	8.03	29.70	-	-	-	0.275	330	330	550
라트비아	-	6.38	50.16	-	-	-	0.275	110	110	550
러시아	-	1.98	1.98	-	-	-	0.275	22	33	220
레바논	-	11.11	23.76	-	-	-	2.2	330	330	550
레소토	-	18.70	41.03	-	-	-	0.275	330	330	550
레위니옹	-	14.96	65.78	-	-	-	-	330	330	550
루마니아	-	1.98	1.98	-	3.30	3.30	0.275	22	33	220
룩셈부르크	-	1.98	1.98	-	-	-	-	22	33	220
르완다	-	5.50	26.73	-	-	-	-	110	110	550
리비아	-	22.11	66.55	-	-	-	2.2	330	330	550
리투아니아	-	14.08	76.23	-	-	-	0.275	330	330	550
리히텐슈타인	-	1.98	1.98	-	3.3	3.30	-	22	33	220
마다가스카르	-	1133	63.36	-	-	-	0.275	110	110	550
마르티니크	-	14.08	83.05	-	-	-	0.275	220	220	550
마리 갈란테	-	14.08	83.05	-	-	-	0.275	220	220	550
마요트	-	14.96	65.78	-	-	-	-	330	330	550
마카오	-	1.98	1.98	-	-	-	0.275	22	33	220
마케도니아	-	27.50	85.03	-	-	-	0.275	330	330	550
말라위	-	21.01	66.11	-	-	-	-	220	220	550
말레이시아	0.99	1.98	1.98	-	-	-	0.275	22	33	220
말리	-	15.95	79.20	-	-	-	0.275	330	330	550
맨 섬	-	21.45	87.23	-	-	-	0.275	330	330	550
멕시코	-	16.83	64.90	-	-	-	0.275	330	330	550
모나코	-	16.06	34.65	-	-	-	-	220	220	550
몽로구1	-	27.28	136.51	-	-	-	0.275	330	330	550
모리셔스	-	7.48	44.55	-	-	-	0.275	110	110	550
모리타니	-	14.63	55.00	-	-	-	0.275	330	330	550
모잠비크	-	13.31	36.41	-	-	-	0.275	220	220	550
몬체라트	-	21.78	43.45	-	-	-	0.275	330	330	550
몬테네그로	-	9.90	116.38	-	-	-	0.275	110	110	550
몰도바	-	7.70	54.45	-	-	-	0.275	110	110	550
몰디브	-	3.85	36.96	-	-	-	2.2	330	330	550
몰타	-	17.71	102.63	-	-	-	0.275	330	330	550
몽골	-	13.53	68.20	-	-	-	0.275	220	220	550
미국	-	1.98	1.98	-	-	-	0.275	22	22	220
미국령버진아일랜드	-	1.98	1.98	-	-	-	-	22	22	220
미얀마	0.66	1.98	1.98	-	-	-	-	22	33	220
바누아투	-	11.00	43.45	-	-	-	0.275	330	330	550
바레인	-	4.18	19.91	-	-	-	0.275	110	110	550
바베이도스	-	21.78	43.45	-	-	-	-	330	330	550
바티칸 시국	-	1.98	1.98	-	-	-	0.275	22	33	220
바하마	-	24.31	122.54	-	-	-	2.2	330	330	550
방글라데시	9.35	9.35	18.70	-	-	-	0.275	110	110	550
버뮤다	-	21.78	43.45	-	-	-	0.275	330	330	550
베네쥬엘라	-	20.35	75.13	-	-	-	2.2	330	330	550
베냉	-	10.56	88.88	-	-	-	0.275	110	110	550
베트남	-	1.98	1.98	-	-	-	-	22	33	220
벨기에	-	1.98	1.98	-	-	-	0.275	22	33	220
벨라루스	4.73	5.50	72.05	-	35.86	35.86	0.275	110	110	550
벨리즈	19.80	19.80	89.54	-	-	-	2.2	330	330	550
보네르	-	21.78	43.45	-	-	-	0.275	330	330	550
보스니아	-	6.16	27.28	-	-	-	0.275	110	110	550
보츠와나	-	9.35	64.68	-	-	-	0.275	330	330	550
볼리비아	-	15.40	50.38	-	-	-	0.275	330	330	550
부룬디	-	7.15	45.21	-	-	-	-	330	330	550
부르키나파소	-	15.95	55.88	-	-	-	0.275	110	110	550
부탄	27.06	33.88	44.66	-	-	-	2.2	330	330	550
불가리아	-	1.98	1.98	-	3.30	3.30	0.275	22	33	220
브라질	-	15.40	51.26	-	-	-	0.275	330	330	550
브루나이	-	5.28	38.61	-	-	-	0.275	220	220	550
사모아	-	21.78	43.45	-	-	-	0.275	330	330	550
사바	-	21.78	43.45	-	-	-	0.275	330	330	550
사우디아라비아	-	4.95	27.28	-	-	-	0.275	220	220	550
사이판	-	1.98	1.98	-	-	-	-	22	33	220
산마리노	-	1.98	1.98	-	-	-	-	22	33	220
생피에르 미클롱	1.54	1.98	1.98	-	-	-	0.275	22	33	220

세네갈	-	24.20	60.50	-	-	-	2.2	330	330	550
세르비아	-	14.63	116.71	-	-	-	-	110	110	550
세우타	-	1.98	1.98	-	-	-	0.275	22	33	220
세이셸	-	13.64	49.28	-	-	-	0.275	330	330	550
세인트루시아	-	21.78	43.45	-	-	-	0.275	330	330	550
세인트마틴	-	11.33	51.26	-	-	-	0.275	330	330	550
세인트빈센트	-	21.78	43.45	-	-	-	0.275	330	330	550
세인트키츠네비스	-	21.78	43.45	-	-	-	0.275	330	330	550
소말리아	-	25.08	37.51	-	-	-	-	220	220	550
솔로몬제도	9.90	19.91	40.15	-	-	-	0.275	330	330	550
수단	-	12.43	27.61	-	-	-	0.275	330	330	550
수리남	-	2035	80.96	-	-	-	0.275	330	330	550
스리랑카	-	1.98	1.98	-	-	-	0.275	22	33	220
스발바르	-	1.98	1.98	-	-	-	0.275	22	33	220
스웨덴	-	1.98	1.98	-	-	-	0.275	22	33	220
스위스	-	1.98	1.98	-	-	-	0.275	22	33	220
스페인	-	1.98	1.98	-	-	-	0.275	22	33	220
슬로바키아	-	10.45	54.45	-	-	-	0.275	220	220	550
슬로베니아	-	11.00	57.20	-	-	-	0.275	330	330	550
시리아	-	935	49.83	-	-	-	22	220	220	550
시에라리온	-	9.90	21.78	-	-	-	-	220	220	550
신트마르텐	-	21.78	43.45	-	-	-	0.275	330	330	550
신트외스타티우스	-	21.78	43.45	-	-	-	0.275	330	330	550
싱가포르	-	1.98	1.98	-	-	-	0.275	22	33	220
쌍박델레미	-	21.78	43.45	-	-	-	0.275	330	330	550
아랍에미리트	-	1.98	1.98	-	-	-	-	22	33	220
아루바	-	21.78	43.45	-	-	-	-	330	330	550
아르메니아	-	1.98	1.98	-	-	-	0.275	22	33	220
아르헨티나	-	13.53	64.68	-	-	-	0.275	220	220	550
아이슬란드	-	1.98	1.98	-	-	-	-	22	33	220
아이티	-	21.78	43.45	-	-	-	0.275	330	330	550
아일랜드	-	1.98	1.98	-	3.3	3.3	0.275	22	33	220
아제르바이잔	-	1.98	1.98	-	-	-	0.275	22	33	220
아프가니스탄	-	11.88	43.45	-	-	-	0.275	330	330	550
앵귤라	-	21.78	43.45	-	-	-	0.275	330	330	550
안도라	-	7.15	51.70	-	-	-	2.2	330	330	550
안티구아	-	21.78	43.45	-	-	-	-	330	330	550
알바니아	-	10.56	62.48	-	-	-	0.275	220	220	550
알제리	-	8.36	65.01	-	-	-	0.275	330	330	550
앙골라	-	8.91	61.16	-	-	-	2.2	220	220	550
에스토니아	-	9.35	74.80	-	-	-	0.275	220	220	550
에콰도르	-	20.35	78.76	-	-	-	0.275	330	330	550
에티오피아	-	4.51	63.80	-	-	-	-	330	330	550
엘살바도르	-	15.95	52.91	-	-	-	0.275	220	220	550
영국	-	1.98	1.98	-	-	-	0.275	22	33	220
영국령버진아일랜드	-	21.78	43.45	-	-	-	0.275	330	330	550
예멘	-	5.83	42.13	-	-	-	2.2	110	110	550
오만	-	5.28	23.98	-	-	-	0.275	110	110	550
오스트리아	-	1.98	1.98	-	-	-	0.275	22	33	220
온두라스	-	17.60	62.48	-	-	-	0.275	330	330	550
올란드제도	-	8.91	32.78	-	8.91	17.60	0.275	220	220	550
요르단	-	11.55	27.83	-	-	-	0.275	330	330	550
우간다	-	9.90	45.43	-	-	-	0.275	110	110	550
우루과이	-	17.93	25.85	-	-	-	-	220	220	550
우즈베키스탄	5.06	9.46	100.65	-	-	-	-	110	110	550
우크라이나	5.28	9.35	60.61	-	-	-	0.275	110	110	550
이라크	-	4.95	35.53	-	-	-	0.275	330	330	550
이란	6.93	6.93	48.73	-	-	-	-	220	220	550
이스라엘	-	19.58	75.46	-	-	-	0.275	330	330	550
이집트	-	12.10	56.65	-	23.43	113.30	0.275	330	330	550
이탈리아	-	15.51	53.13	-	-	-	0.275	330	330	550
인도	-	1.98	1.98	-	-	-	0.275	22	33	220
인도네시아	-	1.98	1.98	-	-	-	0.275	22	33	220
일본	-	1.98	1.98	-	-	-	0.275	22	33	220
자메이카	-	21.78	43.45	-	-	-	-	330	330	550
잠비아	-	9.46	44.55	-	-	-	2.2	220	220	550

저지섬	-	21.45	87.23	-	-	-	0.275	330	330	550
적도기니	-	9.90	49.28	-	-	-	2.2	330	330	550
조지아	-	1.98	1.98	-	-	-	-	22	33	220
중국	-	1.98	1.98	-	-	-	0.275	22	33	220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	24.31	29.26	-	-	-	0.275	330	330	550
지부티	-	13.31	92.73	-	-	-	-	330	330	550
지브랄타	-	1.98	1.98	-	-	-	0.275	22	33	220
짐바브웨	-	11.55	80.30	-	-	-	-	330	330	550
차드	-	14.30	94.60	-	-	-	0.275	330	330	550
체코	-	1.98	1.98	-	-	-	0.275	22	33	220
칠레	-	10.23	52.25	-	-	-	0.275	220	220	550
카나리제도	-	1.98	1.98	-	-	-	0.275	22	33	220
카메룬	-	13.86	103.51	-	-	-	0.275	330	330	550
카자흐스탄	-	6.71	56.76	-	-	-	0.275	110	110	550
카타르	-	1.98	1.98	-	-	-	0.275	22	33	220
카보베르데	-	8.36	107.25	-	-	-	2.2	330	330	550
캄보디아	-	1.98	1.98	-	-	-	-	22	33	220
캐나다	1.54	1.98	1.98	-	-	-	-	22	33	220
케냐	-	10.23	90.86	-	-	-	0.275	110	110	550
케이만군도	-	21.78	43.45	-	-	-	0.275	330	330	550
코소보	-	6.16	77.88	-	-	-	-	330	330	550
코스타리카	-	12.43	24.75	-	-	-	0.275	330	330	550
코트디부아르	-	44.11	56.10	-	-	-	2.2	330	330	550
콜롬비아	20.13	20.13	67.21	-	-	-	0.275	330	330	550
콩고	-	19.80	49.28	-	-	-	2.2	220	220	550
콩고민주공화국	-	20.46	51.26	-	-	-	0.275	220	220	550
쿠라소	-	21.78	43.45	-	-	-	0.275	330	330	550
쿠바	-	13.75	81.51	-	-	-	-	330	330	550
쿠웨이트	0.44	1.98	1.98	-	-	-	0.275	22	33	220
룩셈부르크	-	30.25	78.98	-	-	-	2.2	330	330	550
크로아티아	-	17.71	57.20	-	-	-	0.275	220	220	550
크리스마스섬	-	9.68	36.30	-	-	-	0.275	330	330	550
키르기스스탄	-	2.53	68.20	-	-	-	0.275	220	220	550
키프로스	-	2.31	21.01	-	-	-	0.275	110	110	550
타지키스탄	-	9.46	72.16	-	-	-	0.275	110	110	550
탄자니아	-	14.85	59.18	-	-	-	0.275	330	330	550
태국	-	1.98	1.98	-	-	-	0.275	22	33	220
터크스앤카이코스군도	-	21.78	43.45	-	-	-	0.275	330	330	550
튀르키예	-	1.98	1.98	-	-	-	0.275	22	33	220
투고	-	18.70	82.61	-	-	-	2.2	330	330	550
통가	-	11.00	43.45	-	-	-	0.275	330	330	550
투르크메니스탄	-	17.05	128.70	-	-	-	-	220	220	550
튀니지	-	12.98	28.60	-	-	-	0.275	110	110	550
트리니다드토바고	-	14.41	48.95	-	-	-	0.275	330	330	550
파나마	-	14.96	69.63	-	-	-	-	330	330	550
파라과이	9.90	16.06	48.40	-	-	-	-	220	220	550
파로제도	-	11.11	74.80	-	-	-	0.275	330	330	550
파키스탄	-	12.10	21.45	-	-	-	0.275	330	330	550
파푸아뉴기니	-	11.00	43.45	-	-	-	-	330	330	550
팔라우	-	78.98	138.05	-	-	-	2.2	330	330	550
팔레스타인	-	16.06	63.80	-	-	-	0.275	330	330	550
페루	11.00	11.00	50.71	-	-	-	0.275	110	110	550
포르투갈	-	15.51	64.90	-	51.81	103.73	0.275	330	330	550
폴란드	-	1.98	1.98	-	-	-	0.275	22	33	220
푸에르토리코	-	12.76	28.60	-	-	-	0.275	220	220	550
프랑스	-	1.98	1.98	-	-	-	-	22	33	220
프랑스령 기아나	-	14.08	83.05	-	-	-	0.275	220	220	550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	12.43	72.71	-	-	-	0.275	330	330	550
피지	8.58	15.40	27.06	-	-	-	0.275	330	330	550
핀란드	-	1.98	1.98	-	-	-	0.275	22	33	220
필리핀	-	1.98	1.98	-	-	-	0.275	22	33	220
헝가리	-	1.98	1.98	-	-	-	0.275	22	33	220
호주	-	1.98	1.98	-	-	-	0.275	22	33	220
홍콩	-	1.98	1.98	-	-	-	0.275	22	33	220